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이하 “고객”)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한 중요 서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아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설명서 확인 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본 대출상품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입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를 보유한 고객의 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판단하여, 최대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대출입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 최대 40%의 한도가 부여되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와 이용한도 및 상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 비회원 신용대출
대상	신용카드 회원	신용카드 회원	비회원
대출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60일 이내(결제일별 상이)	최대 36개월
금리	4.5 ~ 19.9%	5.5 ~ 19.9%	4.5 ~ 19.9%
이용한도	최대 5천만원 이내(조건별 상이)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 최대 40% 부여	최대 5천만원 이내(조건별 상이)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방식 등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	분할상환방식 등

Q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프로모션 등에 의한 조정금리 등을 반영하여 적용합니다. 결정된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일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연장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Q2. 대출원금과 이자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원금과 이자는 일정 주기(매달 등)마다 상환하여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최초 심사 시점에 비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4. 대출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나요?

→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출계약 체결 후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만 65세 이상은 30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약정서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금 연체 시 발생하는 불이익

Q.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대출원리금 연체 시에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에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신용점수 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출원금 3천만원을 1개월 이상 연체, 연체금리 8%인 경우 납부할 연체이자 20만원입니다.

- 연체이자 : 20만원(=3천만원 X 8% X 1/12)

Q.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민원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당사 고객센터(1577-6000)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상품명				
적용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기재) %		대출한도	최대 _____ 원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대출기간	취급 후 _____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및 요율	☐ 대상 ☐ 비대상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 본 대출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입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대출금액과 금리는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품은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신청하신 상환 방식은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보다 매달 납부금액이 많습니다.

2. 금리의 변동 및 산출 근거

- 금리의 변동 유무
 -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결정됩니다. 약정금리는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이자율이며, 대출 만기일까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대출 만기일 이전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외환·경제위기, 기업 도산 등)이 발생한 경우, 카드는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 약정금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연장 등 대출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금리의 산출 근거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원가요소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카드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며, 기준금리는 이러한 원가요소에 목표이익률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 금리 산출 요소
 - 신용원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 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 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 상승 가능
 - 업무원가: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업무 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 및 영업 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 조달원가: 카드사의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금조달 수단별 금리, 대출계약별 만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자본원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등을 의미하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별로 구분된 신용위험자본율과 과거 경험치 등을 반영한 자기자본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행사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수수료 등 비용 부담

-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대출원금과 대출이자가 포함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
 -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수수료 : (800)원 ~ (1,300)원

5. 이자 납입 방법

■ 이자의 납입

· 고객님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납입 방법 및 상환 방식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금액·금리시기

· 고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 기간 24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 부담 총 예상 금액	거치 기간 종료 후 월 상환 예상 금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1,074,560원	1 ~ 24회 / 461,440원(원리금)

· 고객이 거치식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 기간 24개월(거치 12개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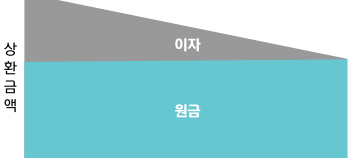
상환 방식	원리금 부담 총 예상 금액	거치 기간 종료 후 월 상환 예상 금액
거치식분할상환	11,549,796원	1 ~ 12회 : 83,333원(이자) 13회 ~ 36회 : 879,150원(원리금)

· 고객이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예시) 대출금액 1천만원, 금리 10%, 대출 기간 24개월

상환 방식	원리금 부담 총 예상 금액	만기시 상환 예상액
만기일시상환	11,999,992원	1 ~ 23회 : 83,333원(이자) 24회 : 10,083,333원(원리금)

■ 상환 방법별 안내

구분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특징	상환 기간 중 동일한 원리금 납부  대출기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매달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환 기간 중 균등한 원금 납부  대출기간 매달 대출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어, 매달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상환 기간 중 이자만 납부  대출기간 약정 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거치 기간 선택	<거치식대출상환을 선택하시는 경우>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거치 기간이 종료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입하셔야 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후에는 거치 기간 추가 연장은 어렵습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거치식대출상환 방식은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치식대출상환'의 거치 기간 종료 시 상환 부담 거치 기간이 종료 후에는 거치 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시작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 도래 시 한 번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장이 불가하거나 금리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및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6. 연체금리(지연배상금율)

- 연체금리는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 3%로 최고 연 19.9%로 합니다.
- 다만, 상품에 따라 연체금리가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단,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지체된 약정이자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4천만원, 약정금리는 연 6%, 연체가산금리는 연 3%인 대출의 이자(2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 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 기간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
연체 발생 ~ 1개월분	지체된 약정이자(20만원) × 연9%(6%+3%) × 1/12	1,500원
연체 1개월 ~ 2개월분	지체된 약정이자(20만원) × 연9%(6%+3%) × 1/12	1,500원
합계		3,000원

- * 연체 발생~1개월분인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과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따로 계산됨
-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체이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로, 연체이자는 대출 조건, 대출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 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단,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이 아닌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예시) 원금 3천만원, 분할상환원리금 매달 250만원, 약정금리 연 6%, 연체가산금리 연 3%인 대출의 분할상환원리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 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연체 기간	연체이자 계산 방법	연체이자
연체 발생 ~ 1개월분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250만원) × 연9%(6%+3%) × 1/12	18,750원
연체 1개월 ~ 2개월분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250만원) × 연9%(6%+3%) × 1/12	18,750원
합계		37,500원

- * 연체발생 ~1개월분인 지체된 분할상환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과 연체1개월~2개월분인 약정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따로 계산됨
-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원리금분할상환 대출의 연체이자만을 월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로, 연체이자는 대출 조건, 대출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 및 분할상환원리금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기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금리가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는 전체 대출잔액이 아닌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카드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대출의 제한(거부)

카드사의 연체대출금 보유자, 카드사에 손해를 끼친 자, 불건전한 대출이 있는 자에 대해서 카드사는 대출을 취급(연장 및 대환 포함)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의 범위

1. 카드사의 본인채무 또는 보증채무가 연체 중인 자
2. 특수채권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3. 신용회복지원, 회생절차, 파산·면책 등의 신청 또는 확정을 받은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도판단정보(기록보유자 포함)에 등록된 자
(다만,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중 대출과 무관한 사유(세금체납 등)로 등록된 자는 제외)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

8. 대출기한 전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카드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등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등(신용카드 개인정보 표준약관 제29조 등에서 정한 사유)

· 카드사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카드사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예) 주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9. 연체정보 등의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등으로 '연체정보 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연체' 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연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 활용됩니다.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② '연체정보 등' 정보(연체사실 등)
- ③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 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10.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금융 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 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불이익 발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대출,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이요이금액이 과도한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1. 채무조정 지원

■ 고객은 카드사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 방법 등은 카드사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지에 관한 사항

■ 대출계약의 상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출을 해지(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해지(상환)하거나 대출 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해지(상환) 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 당일에 해지(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카드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 권유 행위를 한 경우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날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카드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4. 청약의 철회(대출계약철회권)

- 고객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만 65세 이상은 30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청약(대출계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청약(대출계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울러 **청약(대출계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자료열람 요구권

- 회원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회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회사는 회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6.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인 금융소비자가 **자동화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 및 주요기준 등의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말합니다.
 - * 금융회사 임직원이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평가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요구방법: 현대카드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개인신용평가 결과 대응권 신청 또는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 금융회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17.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대출금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인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이 실행된 이후 신용점수 하락, 연체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장 시점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8. 민원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대출상품과 관련한 의문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현대카드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 또는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의 이해 여부 등 추가 안내

-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금융거래가 제약되며 신용점수 등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 **최초 심사 시점에 비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 **동일한 카드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였으며, 대출거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청약(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고객의 권리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